

<참 조>

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6. 2.

제 출 자 : 경기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박물관의 관람시간을 「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개정으로 동·하절기의 구분이 없어진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도록 하고 관장의 관람시간 조정에 대한 재량범위를 넓힘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람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람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의 보호자를 추가하고 박물관 구내에 관람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민편의 증진 측면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람시간을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공휴일과 특별전시기간에는 관람시간을 1시간 연장하도록 함.(안 제3조제1항)
- 나.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대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조제3항)
- 다.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을 추가하여 장애인 복지관계법령의 취지를 반영함.(안 제5조)
- 라. 박물관 구역 안에 매점, 기념품판매소 등 관람자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의2)
- 마.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 주기를 매분기 1회에서 연 2회로 변경하여 회의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, 위원회의 간사를 '학예연구실장'에서 '교육홍보팀장'으로 바꿈으로써 박물관 직제 개편에 따른 직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함.(안 제14조 및 제15조)
- 바. 관계 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히고자 유물감정위원의 수를 '15명'에서 '25명'으로 증원.(안 제19조)

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”를 “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”라 한다.

제1장의 제목 “개관 및 관람”을 “박물관 운영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평일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
2. 토요일, 공휴일, 특별전시회 기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

제3조제3항 중 “국민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”를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·제27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) 관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매점
2. 기념품판매소
3. 식당
4. 부설주차장
5.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14조제1항 중 “매분기 마다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학예연구실장”을 “교육홍보팀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15명 이내”를 “25명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개정이유
	<u>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</u>			<u>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</u>	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도록 개정
	제1장 <u>개관 및 관람</u>			제1장 <u>박물관 운영</u>	제목을 내용과 맞게 변경
제3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(생략)	1.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(토·공휴일, 특별전시회 기간 1시간 연장) 2.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: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<생략> ③관장은 국민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	제3조(관람 및 매표시간) ①(현행과 같음)		1. 평일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. 토요일, 공휴일, 특별전시회 기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②(현행과 같음) ③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----- ----- ---	동·하절기 구분없이 6시까지로 변경 관장의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에 대한 재량범위 확대
제5조(관람료의 면제) (생략)	1.~3. (생략) 4.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.~7. (생략)	제5조(관람료의 면제) (현행과 같음)		1.~3. (현행과 같음)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·제27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 5.~7.(현행과 같음)	장애인 복지 관련 법령 취지 반영
<신설>		제11조의2(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)		관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매표 2. 기념품판매소 3. 식당 4. 부설주차장 5.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	관람객 편의도모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 정 안	개정이유
제14조(회의) ①회의는 <u>매분기마다</u>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(생략)	제14조(회의) ①회의는 <u>연 2회</u>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(현행과 같음)	연 2회로 회의의 내실을 기함.	
제15조(간사) ①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학예연구실장</u> 이 된다. ②(생략)	제15조(간사) ①----- ----- ----- <u>교육홍보팀장</u> -----. ②(현행과 같음)	직제개편에 따른 직명 변경	
제19조 (유물감정위원) ①(생략) ②위원은 <u>15명</u> 이내로 구성하되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경기도문화재위원·박물관운영자문위원·사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 ③(생략)	제19조(유물감정위원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25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③(현행과 같음)	관계전문가의 참여폭을 넓힘.	

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동의안

제출연월일 : 2006. 3. 10.

제 출 자 : 유재원 위원

1. 수정사유

-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“연 2회”로 규정하고 있으나 “연 2회 이상” 으로 수정하여 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제14조 중 “연 2회”를 “연 2회 이상” 으로 한다.

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동의안

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4조 중 “연 2회”를 “연 2회 이상”으로 한다.

수정 조례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	수정이유
제14조(회의) ①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	제14조(회의) ①회의는 연 2회 이 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	“연 2회 이상”으 로 수정하여 회 의의 내실을 기 함.

【 수정안 포함 】

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”를 “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”라 한다.

제1장의 제목 “개관 및 관람”을 “박물관 운영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평일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
2. 토요일, 공휴일, 특별전시회 기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

제3조제3항 중 “국민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”를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·제27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) 관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매점
2. 기념품판매소
3. 식당
4. 부설주차장
5.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14조제1항 중 “매분기 마다”를 “연 2회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학예연구실장”을 “교육홍보팀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15명 이내”를 “25명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당초 개정안 】

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경기도박물관관리및운영조례”를 “경기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”라 한다.

제1장의 제목 “개관 및 관람”을 “박물관 운영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평일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
2. 토요일, 공휴일, 특별전시회 기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

제3조제3항 중 “국민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”를 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”로 한다.

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·제27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) 관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매점
2. 기념품판매소
3. 식당
4. 부설주차장
5. 그 밖에 관람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14조제1항 중 “매분기 마다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학예연구실장”을 “교육홍보팀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15명 이내”를 “25명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